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
참 조

제 목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「건설폐기물법」 개정(안) 관련 의견수렴
알림



1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는 내용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(안)을 입법예고('24.8.7~8.21, 불임 참조) 하였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오는 8월 16일(금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(안) 개요

- **(발의 배경)**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(2014년)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, 실효성 검토결과 (2020년) 재추진키로 함에 따라 개정안 발의

※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KS 인증통합 관련 「건설폐기물법」 일부 개정(안)이 발의(23.11.29)되었으나,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(24.5.29)됨에 따라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

- **(주요 내용)** 기존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를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(KS인증) 제도로 전환(안 제36조) 등
- **(시행일)** 개정·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※ (참고) 순환골재에 대한 KS인증 기준 및 세부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예정

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	개정안	수정안	사유

붙임 : 「건설폐기물법」 일부개정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8/08

주임 **염경미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248 (2024.8.8.) 접수

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뎀로27길 2 (양재동, 일동홀딩스(주)사옥) 3층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cped2110@koras.org / 공개